

숲속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신원인수인으로서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1. 계약기간은 이용자와 협의 하에 계약 시작일을 지정하며 계약 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정한다.
- ② 계약 대상 :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등급 외 대상자를 포함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의 시설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계약 기간
 - 1. 계약 시작일은 대상자(보호자)와 조율하여 정한 개시일과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정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 ④ 계약목적 : 지역사회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경제활동 등을 위해 노인 수발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다.

*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및 보호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제외)
 -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에서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3. 시설내의 청결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 권리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할 의무
3.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무
5. 입·퇴소 절차에 관한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표준이용료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 ① 이용료는 관련법규 변동에 따라 연동하여 변경되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계약서에 의해 규정한다.
- ② 그 밖의 비용 부담액으로 자부담 중 식사비(식사 하루 3회, 간식 2회)로 이용계약서에 의해 규정하되, 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으로 자부담은 상급침실료 1인실, 2인실 등 각각 이용계약서에 의해 규정하되, 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재계약 절차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 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대상자의 희망급여, 개인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입소보호 서비스	<p>가. 일상생활지원: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톱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등</p> <p>나.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등</p> <p>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p> <p>라. 재활치료 지원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등</p>

* 입소보호 : 외래진료 및 입·퇴원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그
에 대한 부담을 하고, 그 외에 두발관리 및 모든 서비스는 이용료에 포함 한다.
다만,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부담한다.

② 서비스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급여계약 후 출타(외박, 입원)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출타(외박, 입원)을 할 경우 출타일로부터 10일간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 계약의 해제

① 대상자는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인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폭력성이 심한 치매 및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 줄 때
6.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흡연자 (화재우려)
8. 이용규정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9. 시설은 대상자가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10.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시설이용 부적응자로 판정되었을 때